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상담」은 독자들이 엮는 페이지입니다. 이민·이주·부동산·세금·노동문제 등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본보 편집국 자상담자에게서 질문의 질의를 해주십시오. 질문서신에는 상담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사회답은 헤드리지 않습니다. 편집부 사실 주소: The Korea Times 4525 Wilshire Blvd., LA, CA 90010

가정법

변호사 : 신혜원



문 법적 별거를 신청하려는데

〈문〉 남편과 별거 중입니다. 아직 이혼에 대한 확신은 없고 그렇다고 다시 합칠 의사도 없습니다. 법적 별거 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지요? 또 법적 별거를 신청하면 차후에 이혼을 신청할 수도 있는지요?

〈답〉 법적 별거란 부부관계가 다시 재결합하기 힘든 단계까지 손상되었을 때 법적 이혼 대신 신청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입니다. 법적 별거와 이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적 별거의 경우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관계의 합법성이 지속됩니다. 이러한 법적 별거는 부부 관계가 가정을 유지하기 힘든 정도로 손상되었지만 개인의 종교가 이혼을 용납하지 않거나 개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

황 속에서 이혼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법적 이혼에 준하는 대응책입니다. 따라서 법적 별거를 신청하게 되면 부부관계의 합법성을 제외한 이혼에 따른 제반 문제(자녀 양육권, 자녀 양육비, 부부 공동 재산 분배, 부부 공동 부채 처분, 배우자 생계 보조비등)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처리되고 정리됩니다. 일단 법적 별거의 최종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법적 혼인에 입각한 부부로서 지켜야할 도의적인 책임과 의무에 구애를 받지 않을뿐더러 이후 취득하는 재산 및 수입도 부부 공동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혼 판결문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없습니다.

문 이혼후 자녀 양육비 한푼도 못받았는데

〈문〉 저는 1년전에 이혼 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 부터 임시 자녀 양육권과 남편과 합의하여 자녀 양육비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번도 자녀 양육비를 지불한 적이 없고 직장도 그만 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는데 남편이 현재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생활이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답〉 Family Support Division of the District Attorneys Offices를 찾아가셔서 본인의 케이스를 상담하시고 의뢰하십시오.

District Attorneys란 일정 지역구를 관할하는 검사로서 흔히 약자로 DA라고 불려집니다. 귀하의

경우, DA는 남편의 현 거주지 주소 파악, 남편이 지난 일년간 수입이 있었는지의 여부, 남편의 현재 직장 및 수입 파악, 지난 일년간 밀려있는 자녀 양육비 액수 책정 및 그에 따른 수급 대책, 현재 유효한 법원의 자녀 양육비 명령의 지속적인 집행 실시, 건강 보험의 필요성 여부 결정 등의 문제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시키는 가운데, 귀하께서는 귀하의 현 수입과 생활 상태가 정부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포함한 기타 보조를 받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도 해당 관청을 통해 알아보셔야겠습니다.

문 성인 자녀 양육비도 청구 가능한가

〈문〉 7년전 이혼했고 현재 20살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저와 함께 살고 있으며 어렸을 때부터 정서발달에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아이들과 차이가 많았습니다. 현재 12세 정도의 정신연령을 소지하고 있으며 정상 성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 제가 법적 보호자로 임명받았습니다. 전 남편은 아들이 18세를 넘어 법적 성인이 되었다며 자녀 양육비 지급을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계속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주 가정법에 의하면, 부모는 자녀의 연령에 제한 없이 정신적 혹은 신체 장애 및 불구로 인해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생계를 꾸려나갈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녀의 생계를 책임질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인 자녀

부양의 의무는 양쪽 부모에게 동등하게 적용되 이혼을 한 부모의 경우 개인의 수입 능력에 따라 각각의 부모가 부담해야할 양육비의 액수가 책정됩니다. 따라서 이혼 기간 또는 법적 성인 연령 관계없이 이혼을 다루었던 해당 법원에 전 남편이 지속적인 자녀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지난 2년간 혼자 아드님의 부양을 임해왔던 사실이나 또 앞으로도 형편이 닿는 한 지속적으로 부양하겠다는 귀하의 의지에 근거하여 전 남편이 자신도 함께 책임져야할 성인 자녀 부양의 의무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인 자녀 양육비 액수의 책정은 성인 자녀의 기본적인 생계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와 양쪽 부모의 재 수입에 준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